



# 퇴직연금의 이해 (5):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및 업무수행

오병국 연구원

- 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」<sup>1)</sup>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등록요건과 업무 수행에 있어서 지켜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.
- 근퇴법은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,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, 운용관리 및 자산 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, 운용관리업무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.
- 금융기관 등이 퇴직연금사업자가 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, 인적·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.
- 근퇴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음.
  -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, 집합투자업자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
  - 보험회사: 「보험업법」 제2조제6호에 의거
  - 은행: 「은행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의거
  - 신용협동조합중앙회: 「신용협동조합법」 제2조제2호에 의거
  - 새마을금고중앙회: 「새마을금고법」 제2조제3항에 의거
  - 근로복지공단: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0조에 의거, 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이어야 함.
- 또한,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퇴직연금사업의 이전을 명령할 수 있음.
- (등록 취소)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사업자의 해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, 등록 요건의 비충족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.

1) 이하 ‘근퇴법’으로 통칭함.

- 등록이 취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등록 할 수 없음.
  - (등록의 말소) 퇴직연금사업을 중단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.
    - 등록이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는 말소된 날부터 2년간 등록 할 수 없음.
  - (이전 명령) 고용노동부장관은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령할 수 있음.
    - 다만, 이전을 받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함.
- 한편,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혹은 가입자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함.
- 운용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  -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별 정보의 제공
    -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
    -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·보관·통지
    - 사업주 또는 가입자가 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것
  -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  - 계좌의 설정 및 관리
    - 부담금의 수령
    -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
    -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 운용지시의 이행
    - 급여의 지급
- 게다가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선관의무를 준수해야하고, 적립금을 운용할 때 정보에 대한 접근용이성, 운용방법 변경의 유연성, 운용결과의 투명성, 자산운용의 안전성 등이 요구됨.
- 퇴직연금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.
  -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할 때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함.
    -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의 취득과 이해가 쉬울 것
    - 운용방법 간의 변경이 쉬울 것
    - 적립금 운용결과의 평가 방법과 절차가 투명할 것

-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될 것
-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를 것